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26.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09. 11. 26.

라. 상정일자 : 2009. 12. 16(제178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2007~2011)에 의거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법정화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조항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명문화(제17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소위원회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u>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u>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급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운영 관련규정에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지침을 시달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설치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225	126	111	7	469
미설치교	1	1	1	0	3

■ 미설치교 : 3교 (서도초, 서도중, 서도고)

- 미설치 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급식소위원회」 활동 병행

- 그러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학교급식개선”과 관련한 추가대책들이 시달되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강제하여 급식운영에 관한 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급식내실화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정종섭, 최병덕, 김용근, 오홍철 의원
 - 급식소위원회 위원들의 소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필요
 - 학교급식업체 선정시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답 변 >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소위원회 위원장에 한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위원들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이 없음 향후 검토하여 개설토록 하겠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김용근, 이명숙, 오홍철, 정종섭, 이병화, 최병덕 의원
-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6명)

7. 기타 특이 사항

○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생략)</p> <p>② 소위원회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단서 신설></u></p>	<p>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소위원회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u>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u></p>